

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제안년월일 : 2004. 7. 14

제안자 : 한창동 의원외

가. 수정이유

-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32조제2항 각호 사항에 대한 자문을 문화재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한 강제의무조항을 재량조항으로 수정하고자 함

나. 수정 주요골자

-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 5조 2항의 “위원회는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32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”를 “위원회는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32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”로 함

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

안 제5조제2항중 “자문한다”를 “자문할 수 있다”로 한다

조 문 대 비 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5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 1.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지정과 그 해제 2.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3.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(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보호단체의 인정과 그 해제 4.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에 관한 사항 5.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현상 변경 또는 도의 반출의 허가에 관한 사항 6.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환경 보전을 위한 행위의 제한·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·제거·이전 등에 관한 사항 7.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매입 8.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존·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인 사항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9. 무형문화재 전수교육보조자 및 장학생 대상자 심의 10. 기타 문화재관리에 관하여 도지사가 부의 하는 사항	제5조(심의및자문사항) ①위원회는 문화재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1.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지정과 그 해제 2.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3.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(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보호단체의 인정과 그 해제 4.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에 관한 사항 5.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현상 변경 또는 도의 반출의 허가에 관한 사항 6.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환경 보전을 위한 행위의 제한·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·제거·이전 등에 관한 사항 7.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매입 8.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존·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인 사항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9. 무형문화재 전수교육보조자 및 장학생 대상자 심의 10. 기타 문화재관리에 관하여 도지사가 부의 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32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	제5조 ① 개정안과 같음 ②위원회는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32조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.